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
----------	----

제출년월일 : 2003. 11. 1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규정신설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신설에 따른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를 전문개정
 - ▷ 현행조례는 당해연도 적립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 ▷ 개정조례는 매년 적립된(발생이자포함)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3.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예치기금액은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는 기금액(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②장기예치기금액은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③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